

#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89 호 2021. 5. 6.(목)

### 조 례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88호[울산광역시 복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89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 8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90호[울산광역시 복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 15

### 고 시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85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 24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87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 25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89호[신명천 개선복구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 26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0호[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 28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2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 30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31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5호[하천 점용 기간연장 허가 고시] ..... 32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6호[하천 점용사용 허가 고시] ..... 33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7호[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3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83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84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02호[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6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03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7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05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 8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06호[행정대집행 계고서] ..... 9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08호[행정대집행 계고서] ..... 9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12호[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9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15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16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18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재공고] ..... 17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22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88호

울산광역시 복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 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⑩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 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급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

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⑤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불공정하도급, 대금미지급, 체불임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기본원칙(제3조 ~ 제5조)
- 다.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제6조)
- 라.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0조)
- 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  
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국내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원의 분야  
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구청장은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2년 6개월 이하로 한다.

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구청장은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소속		직급		직위		"사진" (jpg)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현주소	Email :		전화	주택		
				사무실		
				핸드폰		
최 초 임용일	· . .		징계사항 (종류, 연월일)			
현직급 승진일	· . .					
학력 (최근학력 부터기재)	학교명	부터	까지	학위(전공)	위탁교육훈련기관	
					대학원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보직 부터기재)	기관,부서명	부터	까지	직위(담당업무)	학 과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정명	부터	까지	훈련기관	전 공	
훈련과제	※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수업연한	※ 예) 4학기, 5학기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 학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선발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교육기간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위탁교육 기간의 1/2만큼의 의무복무 및 위탁교육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파견 및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제한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학위 미취득 등) 기 지원받은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위탁교육기관			입학년도	졸업년도
소속	직급	성명	대학원	지원학과 (전 공)	학년 (학기)		

 신청금액

지원 신청액(원)	실 납부액(원)			비고
	계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 외의 학생회비, 교재비 등은 제외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본인은 상기와 같이 20 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훈련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등록금납부영수증.

2. 통장사본.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국내대학 위탁교육생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위탁교육 분야, 신청, 선발에 관한 사항(제3조 ~ 제5조)
- 다. 위탁교육비 지원, 위탁교육생 의무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라.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제8조)



# 울산광역시 복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90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2. “기후변화대응”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정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국내여건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 국제협력의 이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현황 및 분석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물량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보고서 발간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장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등

**제6조(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후변화대응 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제9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약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탄소포인트제 시행)** ① 구청장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또는 마을단위의 가입 경진대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개최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결과 실적 우수 공동주택 또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1.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상금과 상장 수여
2. 시상수는 대회참여 공동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10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제11조(기후행동의 날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타기, 고기 없는 날,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그린터치

설치 등 구민행동과제를 실천하는 날(기후행동의 날을 말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탄소흡수원 확충과 보전)**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급)**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 배출 최소화)** 구청장은 자원낭비와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1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참가자 장려시책 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고효율 에너지 자재 교체사업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6.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재 및 자료 등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3조)
-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의 수립(제4조, 제5조)
- 다.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등(제6조 ~ 제8조)
-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제9조 ~ 제16조)
-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제17조 ~ 제19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85호

##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 북\*\*장(환경위생과)

나. 주소 : 울산\*\*시 \*구 산\*로 1\*1\*(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호계동 943-22번지

나. 면적 : 170㎡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2021. 4. 28. ~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87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연 암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금오\*\*엠 길\*\*

나. 주소 : 경북 \*\*시 봉곡\*로 3\*

**3. 점용 목적 및 개요**

우수 및 오수관로 매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연암동 665-2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일시 36㎡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21. 4. 30. ~ 2021. 5. 1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89호

## 『신명천 개선복구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신명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변경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신명천 개선복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2016년 태풍 ‘차바’시 신명천내 대부분 지역에서 하천범람,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향후 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도모
- 개 요 : 축제 및 호안정비 L=3.5km, 교량 재가설 9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일원(신명천 하류) ~ 대안동 일원(상대안 마을)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복구청)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착수일 : 2017. 10.                      - 준공예정년월일 : 2018. 9.
- 변경 착수일 : 2017. 9.                      - 준공예정년월일 : 2022. 6.

## 6.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사유지 권리자 조서(보상완료 및 변경사항 없음)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국·공유지 권리자 조서(별지조서 참조)

## 7. 실시설계도서 : 시행청 비치 (북구청 건설과)

##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비 고
사 업 비	16,655	16,655	태풍 '차마' 재해복구비

## 9. 공사예정공정표 : 시행청 비치 (울산북구청 건설과)

##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신명천(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 '신명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면적 : 해당사항 없음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청 건설과(☎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0호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변경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곡천 주변 유역이 도시화되고 거주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하천 오염이 심화되고 훼손됨에 따라 천곡천 내 생태하천 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코자 함
- 개 요 : 하천환경 정비 L=1.7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천곡동 천곡문화센터 ~ 천곡동 동천강 합류부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복구청)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착수일 : 2017. 9.                   - 준공예정년월일 : 2018. 12.
- 변경 착수일 : 2017. 9.                   - 준공예정년월일 : 2022. 6.

## 6.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사유지 권리자 조서(보상완료 및 변경사항 없음)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국·공유지 권리자 조서(별지조서 참조)

## 7. 실시설계도서 : 시행청 비치 (북구청 건설과)

##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00	1,518	1,542	940

## 9. 공사예정공정표 : 시행청 비치 (울산북구청 건설과)

##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천곡천(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 '천곡천 하천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11호)'에 따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면적 : 해당사항 없음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청 건설과(☎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2호

##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창 평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 북\*\*장(공원녹지과)

나. 주소 : 울산\*\*시 \*구 산\*로 1\*1\*(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가로수 조성)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창평동 1232-9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9,530㎡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2021. 5. 1. ~ 2021.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93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창좌길 42	시례동 35-1	2021. 5. 6.	건축물 멸실
명촌7길 3	진장명촌지구 95B 7-2L	2021. 5. 6.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5.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5호

## 하천 점용 기간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곡읍\*\*길 12\*

3. 점용 목적 및 개요

가설도로 개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곡동 1032-1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일시 1,714㎡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당초 : 2021. 2. 15. ~ 2021. 4. 15.

변경 : 2021. 2. 15. ~ 2022. 4. 1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6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하천의 명칭

연 암 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 \*\*도사\*\*부

나. 주소 : 울산\*\*시 \*구 봉\*로 13\*

###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설치(상수도 배수관로 매설)

### 4. 점용(변경)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연암동 813-8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일시: 165.5m<sup>2</sup>

- 계속: 33m<sup>2</sup>

### 5. 점용(변경) 허가의 유효기간

- 일시: 2021. 5. 4. ~ 2022. 3. 4.

- 영구: 2022. 3. 5. ~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97호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6.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21. 5.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5,043,723	100.00%	395,383,980	100.00%	49,659,743	12.56%
일반회계	433,642,834	97.44%	392,747,058	99.33%	40,895,776	10.41%
특별회계	11,400,889	2.56%	2,636,922	0.67%	8,763,967	332.36%
기타특별회계	11,400,889	2.56%	2,636,922	0.67%	8,763,967	332.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961	0.04%	178,120	0.05%	8,841	4.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1,338	0.02%	68,900	0.02%	2,438	3.54%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7,905,143	1.78%	0	0.00%	7,905,143	순증
주차장특별회계	3,237,447	0.73%	2,389,902	0.60%	847,545	35.46%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b>총 계</b>	<b>433,642,834</b>	<b>100.00 %</b>	<b>392,747,058</b>	<b>100.00 %</b>	<b>40,895,776</b>	<b>10.41%</b>
100 지방세수입	78,337,000	18.06 %	78,037,000	19.87 %	300,000	0.38%
110 지방세	78,337,000	18.06 %	78,037,000	19.87 %	300,000	0.38%
200 세외수입	25,566,494	5.90 %	24,629,583	6.27 %	936,911	3.80%
210 경상적세외수입	18,982,711	4.38 %	19,399,489	4.94 %	△416,778	△2.15%
220 임시적세외수입	5,685,323	1.31 %	4,331,694	1.10 %	1,353,629	31.25%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8,460	0.21 %	898,400	0.23 %	60	0.01%
300 지방교부세	19,767,000	4.56 %	13,600,000	3.46 %	6,167,000	45.35%
310 지방교부세	19,767,000	4.56 %	13,600,000	3.46 %	6,167,000	45.35%
400 조정교부금등	50,195,300	11.58 %	46,895,300	11.94 %	3,300,000	7.04%
410 자치구조조정교부금등	50,195,300	11.58 %	46,895,300	11.94 %	3,300,000	7.04%
500 보조금	238,271,183	54.95 %	221,912,241	56.50 %	16,358,942	7.37%
510 국고보조금등	150,335,406	34.67 %	142,818,195	36.36 %	7,517,211	5.26%
520 시·도비보조금등	87,935,777	20.28 %	79,094,046	20.14 %	8,841,731	11.1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505,857	4.96 %	7,672,934	1.95 %	13,832,923	180.28%
710 보전수입등	21,003,660	4.84 %	7,000,000	1.78 %	14,003,660	200.05%
720 내부거래	502,197	0.12 %	672,934	0.17 %	△170,737	△25.37%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b>총 계</b>	<b>433,642,834</b>	<b>100.00 %</b>	<b>392,747,058</b>	<b>100.00 %</b>	<b>40,895,776</b>	<b>10.41 %</b>
010 일반공공행정	18,987,751	4.38 %	18,786,019	4.78 %	201,732	1.07 %
020 공공질서및안전	2,622,134	0.60 %	2,318,670	0.59 %	303,464	13.09 %
050 교육	1,569,720	0.36 %	1,518,503	0.39 %	51,217	3.37 %
060 문화및관광	31,970,048	7.37 %	25,133,432	6.40 %	6,836,616	27.20 %
070 환경	12,945,478	2.99 %	13,122,800	3.34 %	△177,322	△1.35 %
080 사회복지	229,493,639	52.92 %	208,975,259	53.21 %	20,518,380	9.82 %
090 보건	12,704,521	2.93 %	10,427,346	2.65 %	2,277,175	21.84 %
100 농림해양수산	25,328,430	5.84 %	21,396,211	5.45 %	3,932,219	18.38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38,853	0.68 %	2,370,289	0.60 %	568,564	23.99 %
120 교통및물류	8,661,048	2.00 %	5,817,253	1.48 %	2,843,795	48.89 %
140 국토및지역개발	22,554,277	5.20 %	19,630,557	5.00 %	2,923,720	14.89 %
160 예비비	4,254,995	0.98 %	3,838,159	0.98 %	416,836	10.86 %
900 기타	59,611,940	13.75 %	59,412,560	15.13 %	199,380	0.34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83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비율 확대(안 제31조, 제33조)
  -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분에 대해 감액율 “70⇒100%”로 확대
  - 지자체 귀책사유로 인한 감면(100%) 신설
  - 청년친화기업 등과 고용위기 지역 등에 대한 감경(50%) 신설
- 나.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4⇒6회”로 확대(안 제34조)
- 다.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안 제4조, 제26조, 제30조)
- 라.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1조, 제65조)

### 3. 개 정 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0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jini8211@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회계담당관
- 3) 팩 스 : 052-241-868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회계담당관실(052-241-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를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  
조제2항제5호”를 “영 제23조·제32조제3항·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  
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  
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 · 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⑤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을 제한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9개월 4회”를 “12개월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3. (생략)</p> <p>4. <u>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p>	<p>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span style="float: right;"><u>영</u></span> ----- -----</p> <p>2.·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u> <u>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u>와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u> <u>제23조·제32조제3항·제39조제2항제5호</u>----- ----- -----.</p>
<p>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p>	<p>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감정평가법인등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frac{\text{(토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text{(토지·건물) 대부를 받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토지) 공용으로 대부를 받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ext{(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층의 총면적}}$$

⑤ (생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

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

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

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⑤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

<신 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 보관과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해당 대부기간 중 전 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2. (생략)
- 3. 300만원 초과: 9개월 4회 이내 분납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산의 이용을 제한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  
----- 전부  
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 12개월 6회  
-----

<삭제>



## 관계법규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

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2. 22.>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와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2016. 7. 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	---
  -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	--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



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84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2. 주요내용

- 가.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 3. 개정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0일까지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회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jini8211@korea.kr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회계담당관

3) 팩 스 : 052-241-868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회계담당관실(052-241-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가격평정)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 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u>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 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다.</p>	<p>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감정평가법인등</u> ----- ----- ----- -----.</p>

## 관계법규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02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5조)
- 다.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라. 건강 증진,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안 제7조 ~ 9조)
- 마.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안 제10조 ~ 11조)
- 바. 장수 축하금 등 지급(안 제12조)
- 사. 노인의 날 등 행사, 표창(안 제13조 ~ 제14조)
- 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안 제15조)
- 자. 노인복지관 운영 및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안 제16조 ~ 17조)

차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18조 ~ 제26조)

카. 업무의 협조 및 사무의 위탁(안 제27조 ~ 제28조)

### 3. 제 정 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사회복지과

2) 전화번호 : 052)241-7663, 팩스번호 : 052)241-7669

3) 전자우편(E-mail) : kn8406@korea.kr

###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7조(건강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건강 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 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사업
6.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
2.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 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 축하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90세 장수 노인 : 30만원 이내의 금품
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

④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장수노인 등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3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제15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노인복지관 운영) ①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취업 상담 및 알선
4.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①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 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 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
- 4.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요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18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

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 등 종사자
3.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복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전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27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란을 삭제한다.

[별표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제15조제2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호계동)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 분관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2길 11(염포동)	
울산 북구 실버케어 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53번지	

[별표 2]

노인복지관의 사용료(제16조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강당, 식당	주간1회 2시간	30,000원	1. 냉난방 시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퍼센트 가산
취미교실, 소회의실	주간1회 2시간	10,000원	

## 관계법규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03호

##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 이유

- 울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효문동과 양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효문동 16필지(5,205㎡)를 양정동으로 편입(안 별표 2)
- 양정동 3필지(3,863㎡)를 효문동으로 편입(안 별표 2)

####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2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의 6란 다음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p>1) 효문동 30-1, 30-2, 30-3, 30-4, 33-2, 33-7, 33-8, 33-9, 33-11, 33-12, 33-13, 33-14, 33-22, 33-23, 939-1, 941-1번지(5,205제곱미터)를 양정동으로 편입한다.</p> <p>2) 양정동 18-6, 19-1, 779-17번지(3,863제곱미터)를 효문동으로 편입한다.</p>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번</th> <th style="width: 85%;">변경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변경내역	1~6	(생 략)	<u>&lt;신설&gt;</u>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번</th> <th style="width: 85%;">변경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1) 효문동 30-1, 30-2, 30-3, 30-4, 33-2, 33-7, 33-8, 33-9, 33-11, 33-12, 33-13, 33-14, 33-22, 33-23, 939-1, 941-1번지(5,205제곱미터)를 양정동으로 편입한다.                      2) 양정동 18-6, 19-1, 779-17번지(3,863제곱미터)를 효문동으로 편입한다.                 </td> </tr> </tbody> </table>	연번	변경내역	1~6	(현행과같음)	7	1) 효문동 30-1, 30-2, 30-3, 30-4, 33-2, 33-7, 33-8, 33-9, 33-11, 33-12, 33-13, 33-14, 33-22, 33-23, 939-1, 941-1번지(5,205제곱미터)를 양정동으로 편입한다. 2) 양정동 18-6, 19-1, 779-17번지(3,863제곱미터)를 효문동으로 편입한다.
연번	변경내역												
1~6	(생 략)												
<u>&lt;신설&gt;</u>													
연번	변경내역												
1~6	(현행과같음)												
7	1) 효문동 30-1, 30-2, 30-3, 30-4, 33-2, 33-7, 33-8, 33-9, 33-11, 33-12, 33-13, 33-14, 33-22, 33-23, 939-1, 941-1번지(5,205제곱미터)를 양정동으로 편입한다. 2) 양정동 18-6, 19-1, 779-17번지(3,863제곱미터)를 효문동으로 편입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 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05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목적(안 제1조)
-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존속기한(안 제2조~제4조)
-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5조, 제6조)
- 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7조~제9조)
- 마.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제12조)
- 바. 회의, 회의록, 간사(안 제13조~제15조)

### 3. 제 정 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6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jini8211@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회계담당관
- 3) 팩 스 : 052-241-868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회계담당관실(052-241-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2.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울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 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금총괄부서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 ①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12호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폐지이유

규칙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21.1.1.)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 3.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및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4. 입법문안 : 「붙임 1」 참조

#### 5. 의견제출

-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2)를 2021년 5월 26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전화:052-241-7781, 팩스: 052-241-7769, E-mail : lyh9877@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15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환경공무직 등 근골격계 질환 및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봉투 판매 중단과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 신설은 전국적인 추세로 환경부 권고사항임
-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 협의사항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여건상 즉시 시행이 어려운 안전기준에 대하여 적용 유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량제 봉투 100리터 제작 중단 → 100리터 용량 삭제(안 별표 3)

-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중 유예 조항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 명칭변경
  - 쓰레기 봉투 → 종량제 봉투(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안 제23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6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turf01@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3) 팩 스 : 052-241-780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미화과(052-241-7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한다)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

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특수규격 쓰레기봉투”를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한다.

-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제14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종량제 봉투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전면”을 “종량제 봉투 전면”으로, “쓰레기봉투사용”을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항 및 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을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쓰레기봉투판매자”를 “종량제 봉투 판매자”로,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을 “(종량제 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를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로, “쓰레기봉투량”을 “종량제 봉투량”으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쓰레기봉투대금지원)”을 “(종량제 봉투 대금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대금”을 “종량제 봉투 대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대금”을 “종량제 봉투 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종량제 봉투 판매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1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쓰레기봉투제작업자”를 각각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사용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 반 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특 수 규 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u>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u>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p> <p>4. ~ 9. (생 략)</p> <p>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u>쓰레기봉투</u>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u>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u> <u>)</u>----- -----.</p> <p>4. ~ 9. (현행과 같음)</p> <p>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u>종량제 봉투</u>----- -----.</p> <p>② <u>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한다)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u></p> <p>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 ③·④ (생 략)</p> <p>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 ⑤ (생 략)</p> <p>&lt;신 설&gt;</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p>
<p>제13조(<u>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u>)</p> <p>① <u>쓰레기봉투는 일반 쓰레기봉투,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u></p> <p>② <u>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u>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u></p>	<p>제13조(<u>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u>)</p> <p>① <u>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u></p> <p>② <u>종량제 봉투----- .-----</u> <u>----- .</u></p> <p>③ <u>일반용 종량제 봉투-----</u> <u>-----</u> <u>-----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u> <u>----- 공공용 종량제 봉투-----</u> <u>-----</u> <u>----- .</u></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u>쓰레기봉투</u>는 구청장이 제작한다.</p> <p>② 구청장이 <u>쓰레기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u>쓰레기봉투전면</u>에 <u>쓰레기봉투사용</u>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p> <p>③ 제13조제2항에 따른 <u>쓰레기봉투</u>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u>쓰레기봉투</u>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p>	<p>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u>종량제 봉투</u>-----.</p> <p>② ----- <u>종량제 봉투</u>----- - <u>종량제 봉투 전면</u>----- <u>종량제 봉투 사용</u>----- ----- -.</p> <p>③ ----- <u>종량제 봉투</u>-----.</p> <p>④ <u>종량제 봉투</u>----- ----- ----- -----.</p>
<p>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방법) ① <u>쓰레기봉투</u>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u>쓰레기봉투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u>쓰레기봉투판매자</u>(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u>쓰레기봉투</u>의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쓰레기봉투</u>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방법) ① <u>종량제 봉투</u>는 구청장이 ----- <u>종량제 봉투 판매소</u>----- ----- ----- ----- <u>종량제 봉투 판매자</u>----- ----- --- <u>종량제 봉투</u> ----- ----- -----.</p> <p>② ----- <u>종량제 봉투</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u>쓰레기봉투</u>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p> <p>2. <u>쓰레기봉투</u>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p> <p>3. &lt;삭 제&gt;</p> <p>4. (생 략)</p> <p>② (생 략)</p> <p>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u>쓰레기봉투</u>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p> <p>-----</p> <p>-----</p> <p>-----</p> <p>-----</p> <p>-----</p> <p>-----</p> <p>1</p> <p>-----</p> <p>----- <u>종량제</u> 봉투 -----</p> <p>-----</p> <p>2. <u>종량제</u> 봉투</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3. &lt;삭 제&gt;</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종량제</u> 봉투 -----</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생략)</p> <p>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u>쓰레기봉투</u>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2. (생략)</p>	<p>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종량제 봉투</u>-----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u>쓰레기봉투</u>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p> <p>2. 3. (생략)</p> <p>4.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 없이 무단 이전하여 <u>쓰레기봉투</u>를 판매하는 경우</p> <p>5. 위조·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u>쓰레기봉투</u>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p>	<p>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 ----- ----- ----- ----- ----- 1 . ----- <u>종량제</u> ----- <u>봉투</u>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 ----- -- <u>종량제 봉투</u>-----</p> <p>5. ----- <u>종량제 봉투</u>-----</p>
<p>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쓰레기봉투제작업자</u>·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① ----- ----- -- <u>종량제 봉투 제작업자</u>-----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u>쓰레기봉투제작업자</u> ·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관계 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p> <p>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u>환경미화원</u>,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꽂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p> <p>1. ~ 3. (생략) ② (생략)</p>	<p>② ----- <u>중량제 봉투 제작업자</u> ----- ----- -----.</p> <p>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 ----- ----- ----- ----- <u>환경공무직</u>-----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u>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u>				<u>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u>											
(단위 : 원)				(단위 : 원)											
용량별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용량별	공급 가격					판매 수수 료	판매 가격
	수집 · 운반 비	처리 비	봉투 제작 비	계	계				수집 · 운반 비	처리 비	봉투 제작 비	계	계		
일 반 용	5ℓ	90	39	19	148	12	160	일 반 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특 수 규 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특 수 규 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기재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중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8.)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 2020년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제2조(교섭권한 및 적용범위) ① “갑”은 “을”을 울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및 구청·군청에 종사하는 환경공무직(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기타 제반 사항을 협약 체결한다.

② “갑”은 전 조합원의 단체교섭을 “을”을 통해서만 행하고 “갑”과 “을” 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규칙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7급 이숙자(241-7802)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16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환경공무직 근골격계 질환 및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용량 삭제하는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 하향 조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업체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 2. 주요내용

- 종량제 봉투(일반용·공공용) 최대 용량 하향 조정(안 별표2 별표4 별표5)
  - 일반용 100리터 제작 중단 → 75리터 사용 확대
  - 공공용 100리터 → 75리터 변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업체 선정방법 명시  
(안 제4조 개정, 안 별지 제3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7호서식까지 삭제)
- 명칭 변경(안 제2조,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 쓰레기봉투 → 종량제 봉투



###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6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turf01@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3) 팩 스 : 052-241-780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미화과(052-241-7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을 “(종량제 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범위, 폐기물의 종류, 대행계약기간

##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 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게 해당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를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조사서”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로,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로, “쓰레기봉투판매소”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쓰레기봉투대금”을 “종량제 봉투 대금”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쓰레기봉투공급”을 “종량제 봉투 공급”으로 한다.

제7조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8조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을 “(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쓰레기 봉투”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를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공급전표”를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 공급·판매대금 납부)”를 “(종량제 봉투 공급·판매대금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

제 봉투”로, “쓰레기봉투판매정산서”를 “종량제 봉투 판매 정산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공급대금납부서”를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 ”로, “쓰레기봉투공급대금납부서”를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공급대금납부서”를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대금지원)”을 “(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대금지원조서”를 “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조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사용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

## 【별표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용량 \n / \n 가격	판 매 가 격
5 l	160원
10 l	310원
20 l	600원
50 l	1,490원
75 l	2,220원
용도	특수규격 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노란색
용량 \n / \n 가격	판 매 가 격
30 l	2,160원
50 l	3,480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별표 3】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제9조제1호 관련)**

-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0분의 1만큼 떨어져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은 청색(DIC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 【별표 4】

종량제 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도
5 ℓ	일반용, 재사용
10 ℓ	일반용, 재사용
20 ℓ	일반용, 재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주) ① 종량제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옅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 특수규격 → 노란색

## 【별표 5】

**종량제 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종량제 봉투 재질 및 규격 등

종류 (용량)	높이 (cm)	나비 (cm)	뚜껑 (mm)	인장강도 (N/mm <sup>2</sup> )	신장률 (%)	인열강도(N/mm <sup>2</sup> )	
						보통	접은 곳
5ℓ	46.5	26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10ℓ	56.5	33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20ℓ	69.5	42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30ℓ	78.5	48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50ℓ	91.5	56	0.045	26.5↑ (270) [1215]	300↑	117.6↑ (120) [540]	88.2↑ (90) [405]
75ℓ	103.5	65	0.050	26.5↑ (270) [1350]	300↑	117.6↑ (120) [600]	88.2↑ (90) [450]

※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에서 ( )은 각각 Kg/cm<sup>2</sup> 및 Kg/cm, [ ]는 최대 하중(g)으로 환산한 값임.

(주) 재질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 종량제 봉투 모형

1. 묶는 종량제 봉투

○ 일반용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 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 공공용

**공공용 종량제 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75ℓ 봉투만 해당된다.

2. 끈 달린 쓰레기봉투

○ 일반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종량제 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 공공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공공용 종량제 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수규격용

<p>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p>
<p>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 -</p>
<p>1. 이 봉투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과 불연성 쓰레기 처리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2.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3. 이 봉투 이외의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예 상 세 대 수	
업소위치		예 상 사 업 장 수	
현 지 상 황	건 물 구 분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	
	건물 소유 여부	자가, 임차	
	업소 거주 유무	유 , 무	
조 사 자 종합의견			
조 사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지정번호 제 호			
<b>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b>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업소 위치			
<p>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 량 제 봉 투 판 매 자 준 수 사 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li> <li>2.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li> <li>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li> <li>4.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li> <li>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li> <li>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li> <li>7. 그 밖의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b></p>			

(뒷면)

변 경 사 항		
변 경 일 자	변 경 내 용	확 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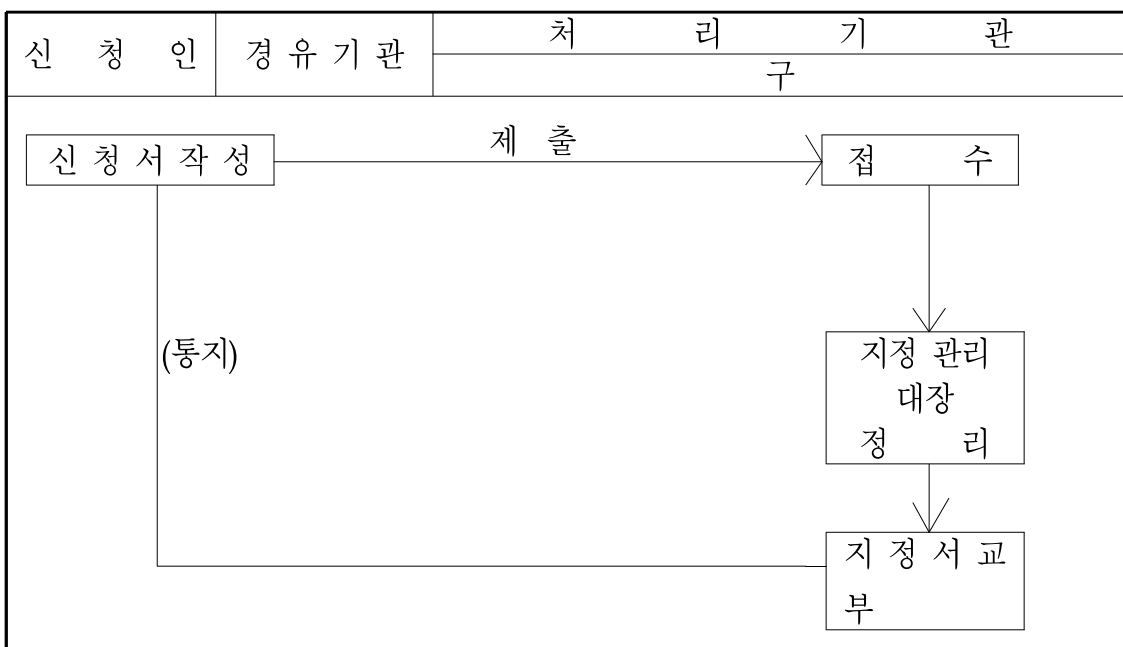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b>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고서</b>				처리기간 3일
○ 지정번호 :				
판 매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지정년월일	
	판매소위치		전화번호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대장

(단위 : *l*, 매)

상 호		변 경		지 정 번 호												
소 재 지				보 증 기 간												
대 표 자		변 경		전 화 번 호												
구 분	공 급 내 역					수 납 내 역										
용도별	5 <i>l</i>		10 <i>l</i>		20 <i>l</i>		50 <i>l</i>		75 <i>l</i>		공급액	수납액	잔액	확인	공급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15호서식】

종 량 제 봉 투 공 급 전 표

(원 본)

공 급 일 시		년 월 일				
봉 투 판매소	상 호	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취 급 자	소 속		직		성 명	인
공 급 내 역 (용도 : )						
구 분	계	5 l	10 l	20 l	50 l	75 l
수 량						
단 가						
금 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종 량 제 봉 투 공 급 전 표

(판매소 보관용)

공 급 일 시		년 월 일				
봉 투 판매소	상 호	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취 급 자	소 속		직		성 명	인
공 급 내 역 (용도 : )						
구 분	계	5 l	10 l	20 l	50 l	75 l
수 량						
단 가						
금 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u>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며 별표 4와 같다.</u></p> <p>② <u>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재질규격과 모형은 별표 5와 같다.</u></p>	<p>제2조의2(종량제 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 ①----- ----- ----- <u>종량제 봉투</u>----- ----- ----- --.</p> <p>② ----- <u>종량제 봉투</u>----- -.</p>
<p>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u>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u>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1. <u>대행구역, 대행범위, 폐기물의 종류, 대행계약기간</u></p> <p>2. <u>수집·운반·처리방법</u></p> <p>3. <u>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u></p> <p>4. <u>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 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p> <p>③ <u>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여야 한다.</u></p> <p>④ <u>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통보서를 공동주택 및 사업장쓰레기 배출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및 사업장쓰레기 배출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u></p>	<p>1. <u>대행구역, 대행범위, 폐기물의 종류, 대행계약기간</u></p> <p>2. <u>수집·운반·처리방법</u></p> <p>3. <u>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u></p> <p>4. <u>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 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u></p> <p>5.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p> <p>③ <u>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게 해당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⑤ <u>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월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⑥ <u>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계약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책임청소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거나 재조정 또는 대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u></p>	
<p>제5조(<u>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u>)</p> <p>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쓰레기봉투의</u>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u>쓰레기봉투에</u>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표시를 하거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업체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u>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종량제 봉투의</u> ----- ----- <u>종량제 봉투</u>----- ----- ----- -----.</p>
<p>제6조(<u>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u>)</p> <p>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u>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u>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u>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에</u>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조(<u>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u>) ① ----- <u>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u>----- ----- <u>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u>----- ----- -----.</p>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u>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조사서</u>를 작성하여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u>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u>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u>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관리대장</u>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 ----- <u>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u>----- ----- -- <u>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u>-- ----- <u>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u>----- ----- .</p>
<p>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쓰레기봉투대금 후불시에는 <u>쓰레기봉투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u> 구청장에게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증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u>쓰레기봉투공급</u>을 아니할 수 있다.</p>	<p>③ ----- ----- -- <u>종량제 봉투 대금</u>----- ----- ----- . ----- ----- <u>종량제 봉투 공급</u>----- ----- .</p>
<p>1.·2. (생략)</p> <p>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u>쓰레기봉투판매소 변경신고서</u>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제7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 ----- ----- <u>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고서</u>----- ----- .</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판매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                      3호서식의 <u>쓰레기봉투판매소 휴업                      (폐업)신고서</u>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제8조(판매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                      -----                      -----                      ----- <u>종량제 봉투 판매소 휴업                      (폐업)신고서</u>-----                      -----.</p>
<p>제9조(<u>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u>)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                      (이하 “판매자”라 한다) 준수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3의 <u>쓰                              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u>을 부착                              하여야 한다.</li> <li>2. 판매자는 별표 2의 <u>쓰레기봉                              투 판매가격표</u>를 판매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li> <li>3. 판매자는 파손된 <u>쓰레기봉투</u>                              를 판매하거나 위조·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봉투를 판매 또                              는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li> <li>4. 판매자는 <u>쓰레기봉투</u>를 구입                              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                              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                              하여야 한다.</li> </ol>	<p>제9조(<u>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사항</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u>-----.</li> <li>2. ----- <u>종량제 봉투</u>                              -----                              -----.</li> <li>3. ----- <u>종량제 봉투</u>                              -----                              -----.</li> <li>4. ----- <u>종량제 봉투</u>                              -----                              -----                              -----.</li> </ol>

현행	개정안
<p>5. 판매자는 <u>쓰레기봉투</u>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p>	<p>5. ----- <u>종량제 봉투</u> ----- ----- .</p>
<p>5의2.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u>쓰레기 봉투</u>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p>	<p>5 의 2 . ----- <u>재사용 종량제 봉투</u> ----- .</p>
<p>6. 그 밖에 구청장의 <u>쓰레기봉투</u>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p>	<p>6. ----- <u>종량제 봉투</u> ----- ----- .</p>
<p>제10조(<u>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u>) ①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u>쓰레기봉투</u>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지정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u>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u>(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판매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u>쓰레기봉투</u> 공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u>쓰레기봉투판매소</u> 공급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u>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u>) ① ----- <u>종량제 봉투</u>----- ----- <u>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u>(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 ----- .</p> <p>② ----- ----- <u>종량제 봉투 공급</u> ----- ----- ----- ----- <u>종량제 봉투 판매소</u> ----- ----- .</p>


현 행	개 정 안
<p>③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 및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제2항의 판매자에게 <u>쓰레기봉투</u>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u>쓰레기봉투공급전표</u>를 작성하여 1매는 <u>쓰레기봉투</u>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다른 1매는 인수증으로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 ----- <u>종량제 봉투</u>를 ----- ----- <u>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u> ----- ----- <u>종량제 봉투</u> ----- ----- ----- ----- ----- -----</p>
<p>제11조(<u>쓰레기봉투</u> 공급·판매대금 납부) ①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u>쓰레기봉투</u> 공급대금을 매월 15일 단위로 <u>쓰레기봉투판매정산서</u>를 작성하여 월 2회(5일, 20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u>종량제 봉투</u> 공급·판매대금 납부) ① ----- ----- <u>종량제 봉투</u> ----- ----- <u>종량제 봉투 판매 정산서</u> ----- ----- -----</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를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u>쓰레기봉투공급대금납부서</u>를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고지한다.</p>	<p>② ----- ----- ----- <u>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u> ----- -----</p>
<p>③ 공급업자는 <u>쓰레기봉투 판매대금</u> 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별지 제16호서식의 <u>쓰레기봉투공급대금납부서</u>에 따라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 <u>종량제 봉투 판매대금</u> ----- ----- ----- <u>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u> ----- -----</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u>쓰레기봉투 판매대금</u> 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별지 제16호서식의 <u>쓰레기봉투공급대금납부서</u>에 따라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 <u>종량제 봉투 판매대금</u> ----- ----- ----- <u>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u>----- -----.</p>
<p>⑤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u>쓰레기봉투</u> 공급대금을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대금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납부한다.</p>	<p>⑤ ----- -----<u>종량제 봉투</u>----- ----- -----.</p>
<p>제13조(<u>쓰레기봉투대금지원</u>)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양로원, 양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u>쓰레기봉투</u>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p>	<p>제13조(<u>종량제 봉투 대금지원</u>) ① ----- ----- ----- ----- <u>종량제 봉투</u>----- -----.</p>
<p>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u>쓰레기봉투대금지원조서</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 ----- ----- ----- <u>종량제 봉투 대금지원조서</u>----- -----.</p>
<p>③ <u>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u>에게는 가정용 <u>쓰레기봉투</u> 1명 월60리터(20리터 봉투 3매 판매가격)기준으로 <u>쓰레기봉투</u>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p>	<p>③ <u>종량제 봉투 지원대상자</u>----- <u>일반용 종량제 봉투</u> ----- ----- <u>종량제 봉투</u> ----- -----.</p>



신·구 별표 및 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2】</b> <b>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b>		<b>【별표 2】</b> <b>중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b>	
용도	일반용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색상	녹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5 ℓ	160원	5 ℓ	160원
10 ℓ	310원	10 ℓ	310원
20 ℓ	600원	20 ℓ	600원
50 ℓ	1,490원	50 ℓ	1,490원
75 ℓ	2,220원	75 ℓ	2,220원
<u>100 ℓ</u>	<u>2,960원</u>		
용도	특수규격 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	용도	특수규격 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녹 색	색상	<u>노란색</u>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30 ℓ	2,160원	30 ℓ	2,160원
50 ℓ	3,480원	50 ℓ	3,480원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p> <div data-bbox="129 461 746 118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text-align: center;"> <h1 style="font-size: 2em;">환경마크</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top: 20px;">쓰레기봉투 판매소</p> </div>	<p>【별표 3】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제9조제1호 관련)</p> <div data-bbox="772 461 1390 118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10px;">종량제 봉투 판매소</p> </div>
<p>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은 청색(DIC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p>	<p>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은 청색(DIC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4】</b>  <b>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용 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ℓ</td> <td>일반용, 재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ℓ</td> <td>일반용, 재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ℓ</td> <td>일반용, 재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ℓ</td> <td>일반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ℓ</td> <td>일반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100 ℓ</td> <td style="color: red;">일반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ℓ</td> <td>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ℓ</td> <td>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td> </tr> </tbody> </table> <p>(주) ① <u>쓰레기봉투</u>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② 색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 녹색</li> <li>○ 공공용 → 옅은 청색</li> <li>○ 재사용 → 흰색</li> <li>○ 특수규격 → 노란색</li> </ul>	용량	용 도	5 ℓ	일반용, 재사용	10 ℓ	일반용, 재사용	20 ℓ	일반용, 재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100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p><b>【별표 4】</b>  <b>중량제 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용 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ℓ</td> <td>일반용, 재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ℓ</td> <td>일반용, 재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ℓ</td> <td>일반용, 재사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ℓ</td> <td>일반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 ℓ</td> <td>일반용, 공공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ℓ</td> <td>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ℓ</td> <td>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td> </tr> </tbody> </table> <p>(주) ① <u>중량제 봉투</u>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② 색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 녹색</li> <li>○ 공공용 → 옅은 청색</li> <li>○ 재사용 → 흰색</li> <li>○ 특수규격 → 노란색</li> </ul>	용량	용 도	5 ℓ	일반용, 재사용	10 ℓ	일반용, 재사용	20 ℓ	일반용, 재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용량	용 도																																		
5 ℓ	일반용, 재사용																																		
10 ℓ	일반용, 재사용																																		
20 ℓ	일반용, 재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100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용량	용 도																																		
5 ℓ	일반용, 재사용																																		
10 ℓ	일반용, 재사용																																		
20 ℓ	일반용, 재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쓰레기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종량제 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쓰레기봉투 재질 및 규격 등

□ 종량제 봉투 재질 및 규격 등

종류 (용량)	높이 (cm)	나비 (cm)	뚜껑 (mm)	인장강도 (N/mm <sup>2</sup> )	신장률 (%)	인열강도(N/mm <sup>2</sup> )	
						보통	접은 곳
5ℓ	46.5	26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10ℓ	56.5	33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20ℓ	69.5	42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30ℓ	78.5	48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50ℓ	91.5	56	0.045	26.5↑ (270) [1215]	300↑	117.6↑ (120) [540]	88.2↑ (90) [405]
75ℓ	103.5	65	0.050	26.5↑ (270) [1350]	300↑	117.6↑ (120) [600]	88.2↑ (90) [450]
100ℓ	113.5	71	0.055	26.5↑ (270) [1485]	300↑	117.6↑ (120) [660]	88.2↑ (90) [495]

종류 (용량)	높이 (cm)	나비 (cm)	뚜껑 (mm)	인장강도 (N/mm <sup>2</sup> )	신장률 (%)	인열강도(N/mm <sup>2</sup> )	
						보통	접은 곳
5ℓ	46.5	26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10ℓ	56.5	33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20ℓ	69.5	42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30ℓ	78.5	48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50ℓ	91.5	56	0.045	26.5↑ (270) [1215]	300↑	117.6↑ (120) [540]	88.2↑ (90) [405]
75ℓ	103.5	65	0.050	26.5↑ (270) [1350]	300↑	117.6↑ (120) [600]	88.2↑ (90) [450]

※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에서 ( )은 각각 Kg/cm<sup>2</sup> 및 Kg/cm, [ ]는 최대 하중(g)으로 환산한 값임.

※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에서 ( )은 각각 Kg/cm<sup>2</sup> 및 Kg/cm, [ ]는 최대 하중(g)으로 환산한 값임.

(주) 재질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다.

(주) 재질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b>쓰레기봉투</b> 모형</p> <p>1. 묶는 <b>쓰레기봉투</b></p> <p>○ 일반용                      ○ 공공용</p> <table border="1" data-bbox="150 416 738 853"> <tr> <td data-bbox="150 416 432 479">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td> <td data-bbox="432 416 738 479"></td> </tr> <tr> <td data-bbox="150 479 432 853"> <p><b>쓰레기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td> <td data-bbox="432 479 738 853"> <p><b>공공용 쓰레기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td> </tr> </table>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p><b>쓰레기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쓰레기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b>종량제 봉투</b> 모형</p> <p>1. 묶는 <b>종량제 봉투</b></p> <p>○ 일반용                      ○ 공공용</p> <table border="1" data-bbox="796 439 1385 875"> <tr> <td data-bbox="796 439 1078 501">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td> <td data-bbox="1078 439 1385 501"></td> </tr> <tr> <td data-bbox="796 501 1078 875"> <p><b>종량제 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td> <td data-bbox="1078 501 1385 875"> <p><b>공공용 종량제 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td> </tr> </table>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p><b>종량제 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종량제 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p><b>쓰레기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쓰레기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p><b>종량제 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종량제 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주) <b>쓰레기봉투</b> 묶는 표시는 50ℓ, 75ℓ, 100ℓ 봉투만 해당된다.</p>	<p>(주) <b>종량제 봉투</b> 묶는 표시는 50ℓ, 75ℓ 봉투만 해당된다.</p>								
<p>2. 끈 달린 <b>쓰레기봉투</b></p> <p>○ 일반용                      ○ 공공용</p> <table border="1" data-bbox="150 1144 738 1581"> <tr> <td data-bbox="150 1144 432 1207">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td> <td data-bbox="432 1144 738 1207">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td> </tr> <tr> <td data-bbox="150 1207 432 1581"> <p><b>쓰레기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td> <td data-bbox="432 1207 738 1581"> <p><b>공공용 쓰레기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td> </tr> </table>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p><b>쓰레기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쓰레기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2. 끈 달린 <b>쓰레기봉투</b></p> <p>○ 일반용                      ○ 공공용</p> <table border="1" data-bbox="796 1122 1385 1559"> <tr> <td data-bbox="796 1122 1078 1184">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td> <td data-bbox="1078 1122 1385 1184">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td> </tr> <tr> <td data-bbox="796 1184 1078 1559"> <p><b>종량제 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td> <td data-bbox="1078 1184 1385 1559"> <p><b>공공용 종량제 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td> </tr> </table>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p><b>종량제 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종량제 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p><b>쓰레기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쓰레기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p><b>종량제 봉투(용량)</b> - 용 도 - (주의사항)</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p>	<p><b>공공용 종량제 봉투</b>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p> <p>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현 행	개 정 안
<p><b>【별지 제5호서식】</b></p> <p style="text-align: center;"><b>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통보서</b></p> <p>귀하가 거주(경영)하고 있는 ( )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1조제2항, 제3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를(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로 지정(해제)통보합니다.</p> <p>1. 대행업체명 :  2. 대표자 :  3. 대행업체 소재지 :  4. 연락처 :</p> <p>※ 배출자 준수사항  ①위 배출자는 구청장과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용 쓰레기봉투(사업장쓰레기의 경우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쓰레기감량과 재활용운동에 솔선참여 실천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체가 수거지연 등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북구청 환경미화과 (☎219-7382,7392)로 연락한다.  ④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한 배출자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 안																				
<p><u>【별지 제7호서식】</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적 보고서</p> <p>문서번호 :           (전화번호 :    )    .    .    .</p> <p>수    신 : 울산광역시북구청장</p> <p>참 조 : 환경미화과장      발 신 :    (인)</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수집처 (업소명)</th> <th colspan="3" style="width: 40%;">수집운반량(톤)</th> <th colspan="3" style="width: 40%;">처 리 내 역(톤)</th> </tr> <tr> <th style="width: 10%;">운반 차량</th> <th style="width: 10%;">대 수</th> <th style="width: 20%;">운반량</th> <th style="width: 10%;">계</th> <th style="width: 10%;">매 립</th> <th style="width: 10%;">소 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40px;">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수집처 (업소명)	수집운반량(톤)			처 리 내 역(톤)			운반 차량	대 수	운반량	계	매 립	소 각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수집처 (업소명)		수집운반량(톤)			처 리 내 역(톤)																
	운반 차량	대 수	운반량	계	매 립	소 각															

현 행					개 정 안						
<b>【별지 제8호서식】</b>					<b>【별지 제8호서식】</b>						
<b>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b>				처리기간 3일	<b>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b>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보 증 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		상 호		보 증 서	보증보험증권( ) 재정보증서( )		
업소위치			예 상 세 대 수		예 상 사업장 수	업소위치			예 상 세 대 수		예 상 사업장 수
건물형태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건물형태		목조한옥( ) 양옥( ) 고층빌딩( ) 상가( ) 기타( )				
<p>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u>쓰레기봉투</u>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p>					<p>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u>종량제 봉투</u>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 (쓰레기봉투대금후불시)				수수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1부 (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				수수료		
				없 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뒷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					구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					지 정 기 준 적 합 여 부 조 사 및 통 보						
적 합		부 적 합			적 합		부 적 합				
지 정 서 교 부		부 지 정 통 보			지 정 서 교 부		부 지 정 통 보				

현 행				개 정 안			
<b>【별지 제9호서식】</b>				<b>【별지 제9호서식】</b>			
<b>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b>				<b>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b>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예상세대수		상호		예상세대수	
업소위치		예상사업장수		업소위치		예상사업장수	
현 지	건물구분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		현 지	건물구분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상가, 기타	
	건물소유여부	자가, 임차			건물소유여부	자가, 임차	
상 황	업소거주유무	유, 무		상 황	업소거주유무	유, 무	
조사자				조사자			
종합의견				종합의견			
조사년월일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급 :	성명:	(인)	조사자	직급 :	성명:	(인)

현 행	개 정 안																																
<b>【별지 제10호서식】</b>	<b>【별지 제10호서식】</b>																																
지정번호 제 호 <b>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b>	지정번호 제 호 <b>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생 년 월 일</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상 호</td> <td colspan="3"></td> </tr> <tr> <td>업 소 위 치</td> <td colspan="3"></td> </tr> </table>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업 소 위 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생 년 월 일</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상 호</td> <td colspan="3"></td> </tr> <tr> <td>업 소 위 치</td> <td colspan="3"></td> </tr> </table>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업 소 위 치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업 소 위 치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업 소 위 치																																	
<p>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b>쓰레기봉투</b>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 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b>쓰레기봉투</b>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li> <li>2. 판매자는 <b>쓰레기봉투</b>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li> <li>3. 판매자는 파손된 <b>쓰레기봉투</b>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b>쓰레기봉투</b>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li> <li>4. 판매자는 <b>쓰레기봉투</b>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b>쓰레기봉투</b>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li> <li>5. 판매자는 <b>쓰레기봉투</b>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li> <li>5의2.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b>쓰레기봉투</b>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li> <li>6. 기타 구청장의 <b>쓰레기봉투</b>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b>울산광역시 북구청장</b></p>	<p>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b>종량제 봉투</b>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종량제 봉투 판매자 준수 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b>종량제 봉투</b>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li> <li>2. 판매자는 <b>종량제 봉투</b>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li> <li>3. 판매자는 파손된 <b>종량제 봉투</b>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b>쓰레기봉투</b>를 판매 및 보유해서는 아니 됩니다.</li> <li>4. 판매자는 <b>종량제 봉투</b>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b>쓰레기봉투</b>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li> <li>5. 판매자는 <b>종량제 봉투</b>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li> <li>6.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b>종량제 봉투</b>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li> <li>7. <b>그 밖의</b> 구청장의 <b>종량제 봉투</b>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b>울산광역시 북구청장</b></p>																																
(뒷면)	(뒷면)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변경 일자</th> <th style="width: 45%;">변경 내용</th> <th style="width: 40%;">확 인 (인)</th>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변경 일자	변경 내용	확 인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변경 일자</th> <th style="width: 45%;">변경 내용</th> <th style="width: 40%;">확 인 (인)</th>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변경 일자	변경 내용	확 인 (인)																	
변경 일자	변경 내용	확 인 (인)																															
변경 일자	변경 내용	확 인 (인)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판매소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b>【별지 제12호서식】</b>				<b>【별지 제12호서식】</b>			
(앞면)				(앞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b>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고서</b>			처리기간 3일
○ 지정번호 :				○ 지정번호 :			
판 매 자	성명		생년월일	판 매 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자장년월일		상호		자장년월일
	판매소위치		전화번호		판매소위치		전화번호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 <b>종량제 봉투</b> 판매소에 대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울산광역시 북구청장</b>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b>쓰레기봉투</b>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b>종량제 봉투</b>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뒷면)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구				구	



현 행

【별지 제1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대장

(단위 : l, 매)

상 호					변 경					지 정 번 호								
소 재 지									보 증 기 간									
대 표 자					변 경					전 화 번 호								
구 분	공 급 내 역										수 납 내 역							
용도별	5 l		10 l		20 l		50 l		75 l		100 l		공급액	수납액	잔액	확인	공급자	비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대장

(단위 : l, 매)

상 호					변 경					지 정 번 호							
소 재 지									보 증 기 간								
대 표 자					변 경					전 화 번 호							
구 분	공 급 내 역										수 납 내 역						
용도별	5 l		10 l		20 l		50 l		75 l		공급액	수납액	잔액	확인	공급자	비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현 행									
<b>【별지 제15호서식】</b>									
<b>쓰레기 봉투 공급 전표</b>									
(원 분)									
공급일시	년 월 일								
봉투 판매 소	상호	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자	소속	직	성명			①			
공 급 내 역 (용도 : )									
구분	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수량									
단가									
금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쓰레기 봉투 공급 전표									
(판매소 보관용)									
공급일시	년 월 일								
봉투 판매 소	상호	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자	소속	직	성명			①			
공 급 내 역 (용도 : )									
구분	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수량									
단가									
금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개 정 안									
<b>【별지 제15호서식】</b>									
<b>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b>									
(원 분)									
공급일시	년 월 일								
봉투 판매 소	상호	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자	소속	직	성명			①			
공 급 내 역 (용도 : )									
구분	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수량									
단가									
금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									
(판매소 보관용)									
공급일시	년 월 일								
봉투 판매 소	상호	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취급자	소속	직	성명			①			
공 급 내 역 (용도 : )									
구분	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수량									
단가									
금액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현 행

### 【별지 제16호서식】

**쓰레기봉투공급대금납부서**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관(인)			

(수납기관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인)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관귀하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출납원	인		

(구 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인)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관귀하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출납원	인		

(구 보관용)

**영 수 증**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인)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납부자용)

## 개 정 안

### 【별지 제16호서식】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울산광역시내 각종금융기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인)			

(수납기관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인)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귀하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출납원	인		

(구 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인)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관귀하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출납원	인		

(구 보관용)

**영 수 증**

과세기관		울산광역시북구	
제 호	년도	일반회계(세외수입)	
주 소		구 동 번지	
납부자		(인)	
(관)		(항)	
(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일금 ₩ _____			
단,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구 금고(인)			

(납부자용)



##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기재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09호(2017. 6.27.)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 신규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존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 도입
    - ※ 대행지역의 확대·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과 삼진 아얏제 등의 페널티 부여
  - 적절한 계약기간(예 : 2~3년)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18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재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5. .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80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1. 5. 4. ~ 2021. 5. 13.(10일간)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 가. 복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나. 복구 소재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사업체에 소속된 자
  - 다. 선정 후 사전교육 수료가 가능한 자
6. 주요기능
  - 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 나.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다.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7.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1부 및 증빙자료(필요 시)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나. 이메일 : mini0208@korea.kr
9. 선정결과 : 2021. 5. 19.(수)한 선정자 개별통지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052-241-7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 . .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를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비 고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 시까지

\*필수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위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의거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622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구성 및 위원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복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안 제12조)
  - 위원 수 : 20명 이내 ⇒ 구청장과 복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 구성 조정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명 → 1명
    - 구 체육회 임원 5명 → 삭제
-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
  -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동호인조직” →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6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parkwanho@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문화체육과
- 3) 팩 스 : 052-241-7339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41-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단체·생활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단체·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체육동호인”을 “체육동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임기는 잔여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연맹 등 각종 <u>생활체육단체</u>의 육성과 운영 지원</p> <p>8. ~ 11. (생략)</p> <p>제5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p> <p>①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u>생활체육단체</u>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명</p> <p>3. (생략)</p> <p>4. <u>구 체육회 임원 5명</u></p> <p>5. ~ 6. (생략)</p>	<p>----- <u>체육단체</u> -----</p> <p>-----</p> <p>8. ~ 11.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p> <p>① -----</p> <p>-----</p> <p>-----</p> <p><u>체육단체</u>-----</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p>②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1명</p> <p>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5. ~ 6.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생략)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 아. (생략)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